

# 장애 학생 따돌리기 및 장애 관련 괴롭히기

2016년 2월, 간행물 #5512.03

## 자주 묻는 질문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장애학생을 따돌리는 행위는 장애학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거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장애관련 괴롭힘을 처리하고 방지하는 학교의 법적 의무를 다룹니다. 이 간행물은 또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프로세스와 다른 절차를 통해 따돌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 1) 따돌림이란 무엇입니까?

따돌림은 힘의 불균형, 피해를 초래하려는 의도와 \_\_\_\_\_ 따돌림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 언어적 따돌림: 놀리기, 귀찮게 하기, 이름 부르기, 위협하기
- 육체적 따돌림: 때리기, 발걸기, 발로 차기, 침뱉기, 밀기

---

<sup>1</sup> <http://www.stopbullying.gov/> “주 문서로 돌아가기”

- 사회적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사회적 관계 조작, 돈이나 재산 요구하기, 협박
- 사이버 따돌림: 상대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문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이메일 등의 전자적 행동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따돌림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에 대해 실행하는 “모든 심각하거나 만연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동이나 행위”라고 ... 따돌림 행동이나 행위에는 서면 통신문, 전자적 행위, 성희롱, 증오 폭력, 괴롭힘, 위협, [협박이 포함됩니다.](#)<sup>3</sup> 따돌림 행위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육체적 위하나 재산 피해에 대한 두려움
- 신체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
- 학업 성적 차질
- 학교 활동, 서비스 및 혜택에 참여하고 [수혜받는 것을 방해.](#)<sup>4</sup>

## 2) 장애관련 괴롭히기란 무엇입니까?

교육부 인권사무소(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 에서는 장애관련 괴롭히기가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들이 학교 활동이나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것을 제한한다고

---

<sup>2</sup> 캘리포니아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 32261(f), 48900(r)(1)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3</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8900(r)(1), 48900.2, 48900.3, 48900.4.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4</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2261(f), 48900(r)(1). [“주 문서로 돌아가기”](#)

명시했습니다.<sup>5</sup> 괴롭힘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 학대 및 위협일 수 있습니다. 따돌림과는 달리 장애관련 괴롭히기에는 특정 대상을 향하지 않고,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으며, 별도의 사건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sup>6</sup> 하지만, 따돌림이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그리고/또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따돌림이 장애관련 괴롭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관련 괴롭히기는 학생 및 동료와 심지어 교사 및 행정직원과 같은 학교 직원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sup>7</sup>

### 3) 학교에서의 따돌림 및 장애 관련 괴롭히기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 따돌림, 장애관련 괴롭히기 및 차별금지 법률

연방법에 의거,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제 504조와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에서는 연방기금을 받는 학군과 정부기관의 장애관련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돌림 및 장애관련 괴롭히기는 장애관련 차별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 인권사무소(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는

---

<sup>5</sup>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letters/colleague-201010.pdf>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6</sup>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letters/colleague-201010.pdf>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7</sup>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isabharassltr.html> “주 문서로 돌아가기”

장애관련 괴롭히기가 차별의 한 형태이며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제 504조와 미국 장애인법 타이틀 II 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sup>8</sup>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학교에서 장애와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sup>9</sup>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에 온전히 참여하고, 차별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및 기타 편견에 맞설 확고한 의무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 특성이나 상태와 관련하여 한 개인에 대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캘리포니아주 헌법(California Constitution) 및 미국 헌법(United States Constitution)에서 보장하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저해합니다.](#)<sup>10</sup>

교사나 행정직원과 같은 책임 있는 직원이 괴롭힘 행동에 대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행동할 경우 그러한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학교에서 괴롭힘을 아는 것입니다. 학군에는 자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게 되었을 [차별적인 괴롭힘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sup>11</sup>

### 따돌림과 장애인 교육법

또한,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의거, 학군은 특수교육의 자격대상인 장애학생에게 자유롭고 적합한

---

<sup>8</sup>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isabharassltr.html>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9</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20.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10</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01(a)-(c).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11</sup> 각주 9 참조,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letters/colleague-201010.pdf> “주 문서로 돌아가기”

공공교육(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 인권사무소(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는 장애관련 괴롭힘이 공공교육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자유롭고 적합한 공공교육(FAPE)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sup>12</sup>

#### 4) 학교에서 따돌림 및 장애관련 괴롭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학군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 적대적 학습 환경

만약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또는 장애 관련 동료의 괴롭힘이 상당히 심각하여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그러한 괴롭힘을 장려, 관용, 적절한 처리 부재 또는 무시할 경우, 해당 학군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sup>13</sup> 다수의 법원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심각하고 만연한 괴롭힘이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할법 제 50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sup>14</sup> 괴롭힘은 해당 행동이 충분히 심각하고, 만연하거나,

---

<sup>12</sup>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isabharassltr.html>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13</sup> 34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100, 104 및 106.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14</sup> 참조, *Guckenberger v. Boston University*, 957 F. Supp. 306, 314 (D. Mass. 1997); *Pell v. the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1998 U.S. Dist. Lexis 407, 56 (S.D.N.Y. 1998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과 *Rick C. v. Lodi School District*, 32,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Law Report, 232. “[주 문서로 돌아가기](#)”

집요하여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기회에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거나 제한할 때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징계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 따돌림에 관여한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따돌림도 포함됩니다.](#)<sup>15</sup>

학교 교장이 판단하기에 어떤 학생이 "수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현저한 무질서를 초래하며,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직원이나 학생의 권리를 실제로 침해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하고 만연한"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에 고의적으로 관여했다면 해당 학생을 정학시키거나 퇴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sup>16</sup>

### 따돌림 방지 정책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거 학군에서는 학교에서의 차별,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sup>17</sup> 또한 학군에서는 차별,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불만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sup>18</sup> 학군의 정책에는 불만 조사와 해결에 대한 [일정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sup>19</sup> 이 정책에는 또한 학부모가 학군의 불만에 대한

---

<sup>15</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8900.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16</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8900.4.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17</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34.1(a)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18</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34.1(b)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19</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34.1(b)(2) [“주 문서로 돌아가기”](#)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청원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sup>20</sup>

학군에서는 학교에서의 차별,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을 신고하는 사람이 보복을 받지 않고 신고인의 신원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sup>21</sup> 또한 학군은 불만 절차에 학교 직원이 차별, 괴롭힘, 협박이나 따돌림을 목격하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sup>22</sup>

귀하 지역의 학군에 차별,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 정책과 불만 절차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 지역의 학군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용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이 정보는 귀하의 [사용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sup>23</sup>

### 학군 전학 우선권

따돌림을 당한 학생의 부모는 [학군간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sup>24</sup>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학군간 전학에 대한 우선권 또는 [학군간 출석 합의 도출에 대해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sup>25</sup> 만약 거주 학군의 직원이나 전학 요청 대상 학군의 직원이 해당

---

<sup>20</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34.1\(b\)\(3\)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21</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34.1\(f\)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22</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34.1\(b\)\(1\)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23</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34.1\(c\)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24</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6600\(b\) “주 문서로 돌아가기”](#)

<sup>25</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6600\(b\) “주 문서로 돌아가기”](#)

학생이 거주 학군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판단한 경우, 우선권을 제공하고 특별히 [심사속고합니다.](#)<sup>26</sup>

### 5) 부모들은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녀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은 행동, 분위기 또는 외모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 식습관 및 잠자리 습관의 변화
- 학점 및 학업 성적 하락
- 학교 회피, 무단결석, 지각 또는 기타 학교를 싫어하는 표현
- 육체적 다툼이나 베임, 멍 또는 찢어진 옷과 같은 부상의 증거
- 우울함, 불안함, 외로움 또는 낮은 자존감

때때로 장애학생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가 아이와 대화하여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 6) 학부모는 어떻게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이용하여 따돌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심이 들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는 따돌림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학교 직원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sup>26</sup>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6600(b) [“주 문서로 돌아가기”](#)



만약 학부모가 따돌림이 해당 아동의 정서적 및 사회적 안녕 및/또는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해당 아동의 정신 및 정서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평가는 해당 학부모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해당 자녀와 교육에 대한 따돌림의 영향을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에서는 따돌림 또는 장애관련 괴롭히기가 해당 아동이 교육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아동이 자유롭고 적합한 공공교육(FAPE)을 받을 수 있도록 따돌림 문제를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돌림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목표, 편의 및 서비스를 해당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따돌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의 목표와 개입의 일부 예입니다.

**사회적 기량 구축** 적합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고, 적합하지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따돌림 행위를 식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때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는 것이 부적절한지 모르며 따돌림에 공격적으로 대응합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개발** 긍정적인 관계와 우정을 개발할 수 있는 학생은 자신감을 갖고 따돌림이나 괴롭힘 행위에 더 잘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주장 기량 개발** 적당한 성인에게 어떻게 그리고 언제 알릴 것인지, "그만해"라고 말하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회피하기 등의 따돌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독 또는 따돌리는 아이들로부터 분리**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은 교직원들이 학생을 모니터 또는 밀착 수행하거나, 따돌림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학생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격한 상황 또는 환경(예를 들어, 복도나 버스 뒤)을 피하도록 해주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 해당 아동이 "벌을 받는다"거나, 학생이 과도하게 제한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동료와의 긍정적인 상호 대응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담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 이는 학교 심리조사관과의 상담 또는 교사, 안내 상담사 또는 교장 등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찾아가야 할 사람들과의 비공식적인 수속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및 교육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특수 요구를 이해하며, 그들이 해당 아동의 IEP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 및/또는 동료 교육** 교직원에게 학교의 따돌림 정책 및 불만과 신고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적합하다면, 직원은 학생의 장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의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목표, 편의 및 서비스를 해당 아동 고유의 필요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 7) **학군에서 장애학생을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 학군에서 특수교육법 또는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해당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는

지역 교육기관에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통합 민원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s)에 나와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http://www.cde.ca.gov/re/cp/uc/>와 <http://www.cde.ca.gov/re/di/eo/complaint.asp>입니다.

또한, 해당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포함시켜야 할 것에 대해 학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부모는 적법절차에 의한 심의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와 관련된 교육 차별화에 대해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시민권리국(OCR, Office of Civil Rights)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불만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 있는 간행물 특수교육 권리와 책임(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SEERR.htm>

[날짜]

수신: [교장 이름]

[학교 이름]

[학교 주소]

발신: [학부모 이름]

[주소]

제목: [학생 이름]

[학년 수준]학년

생년월일: [학생의 생년월일]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제 아이, [학생 이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장애 학생입니다. 제 아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기입]. 이러한 괴롭힘은 제 아이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는 [괴롭힌 아이(들)의 이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시기]에 다음과 같이 발생했습니다:[최대한 자세하게 사건을 기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들)의 이름]이(가) 그 사건과 [그들의 대응]을(를) 목격했습니다. 제 아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시기]에 [학교 직원의 이름]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교 직원의 반응에 대해 기술]. 저는 이 사건을 [통보를 받게 된 방법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따돌림과 장애관련 괴롭힘이 제 아이가 교육을 받는데 영향을 미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부상이나 영향, 의료/심리치료 필요, 학업 또는 학교 활동 출석, 참석 및 성과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영향 설명].

아시겠지만, 제 아이는 장애 학생이며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504 플랜 [해당될 경우,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장애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으로부터 받는 수혜를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장애와 관련된 따돌림 및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학군에서 차별, 괴롭힘 및 따돌림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차별, 괴롭힘 및 따돌림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불만 절차를 수립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학군의 정책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 결과 및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그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 학생 따돌리기 및 장애 관련 괴롭히기

---

또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504 플랜 [해당될 경우, 하나를 선택] 회의를  
가급적 신속하게 소집하여 이 문제 처리를 위해 가능한 편의, 서비스 및/또는  
지원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즉각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서명]

[날짜]

[날짜]

수신: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haron Felix-Rochon, Director  
Office of Equal Opportunity  
1430 N Street, Suite 4206  
Sacramento, CA 95814

발신: [학부모 이름]  
[학부모 주소]

안녕하십니까,

제 아이 [학생 이름]이(가) 자신의 장애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학군 이름]을(를) 상대로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학생 이름]은(는) [학교 명의]의 [학년 수준]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제 아이는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장애 기입]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504 플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해당될 경우 선택].

[학생 이름]이(가) 학교에서 자기 장애와 관련하여 따돌림 및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시기]에 다음과 같이 발생했습니다:[최대한 자세하게 사건을 기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들)의 이름]이(가) 그 사건과 [그들의 대응]을(를) 보거나 들었습니다. 제 아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시기]에 [교직원의 이름과 직책]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했고 그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교 교직원의 대응에 대한 설명]. 저는 이 사건을 [통보를 받게 된 방법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괴롭힘과 해당 학생의 장애와의 관계 설명]와(과) 같은 이유로 이 괴롭힘 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 관련 괴롭힘으로 적대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제 아이가 교육을 받는데 영향을 받았고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신체적/정서적 부상이나 영향, 의료/심리치료 필요, 학업 및/또는 학교 활동 출석, 참석 및 성과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영향 설명].

저는 [학군에 서신을 보낸 날짜]일자로 해당 학군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학군에서는 이에 대해 [학군의 대응에 관해 기술]와(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저는 학군에서 [왜 그들의 대응이 장애 관련 괴롭힘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 설명]와(과) 같이 한 것으로 볼 때 장애와 관련된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 504조, 1990년 미국 장애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타이틀 II,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 200, 201, 220, 234, 234.1조는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교육 참여 및 수혜의 기회 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르면, 장애관련 괴롭힘으로 인해 학군에서 자유롭고 적합한 공공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귀하의 불만의 결과로 학군에서 취하기를 바라는 조치 즉, 학생 상담, 보상 서비스,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및 장애관련 괴롭힘에 대한 교육, 학군 정책에 대한 수정 등에 대해 설명.*

여기에 [서신과 기타 통신문, 결정문 등을 포함하는 관련 서류/증빙을 표시]을(를) 동봉했습니다.

이 항의서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즉각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날짜]

[날짜]

수신: San Francisco Office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Beale Street, Suite 7200  
San Francisco, CA 94105-1813

발신: [학부모 이름]  
[학부모 주소]

안녕하십니까,

제 아이 [name of student]이(가) 자신의 장애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name of school district]을(를) 상대로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학생 이름]은(는) [학교 명의]의 [학년 수준]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제 아이는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장애 기입]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504 플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해당될 경우 선택].

[학생 이름]이(가) 학교에서 자기 장애와 관련하여 따돌림 및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시기]에 다음과 같이 발생했습니다:[최대한 자세하게 사건을 기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들)의 이름]이(가) 그 사건과 [그들의 대응]을(를) 보거나 들었습니다. 제 아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시기]에 [교직원의 이름과 직책]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했고 그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교 교직원의 대응에 대한 설명]. 저는 이 사건을 [통보를 받게 된 방법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괴롭힘과 해당 학생의 장애와의 관계 설명]와(과) 같은 이유로 이 괴롭힘 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 관련 괴롭힘으로 적대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제 아이가 교육을 받는데 영향을 받았고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신체적/정서적 부상이나 영향, 의료/심리치료 필요, 학업 및/또는 학교 활동 출석, 참석 및 성과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영향 설명].

저는 [학군에 서신을 보낸 날짜]일자로 해당 학군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군에서는 이에 대해 [학군의 대응에 관해 기술]와(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저는 학군에서 [왜 그들의 대응이 장애 관련 괴롭힘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 설명]와(과) 같이 한 것으로 볼 때 장애와 관련된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 504조, 1990년 미국 장애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타이틀 II는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교육 참여 및 수혜의 기회 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르면, 장애관련 괴롭힘으로 인해 학군에서 자유롭고 적합한 공공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귀하의 불만의 결과로 학군에서 취하기를 바라는 조치 즉, 학생 상담, 보상 서비스,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및 장애관련 괴롭힘에 대한 교육, 학군 정책에 대한 수정 등에 대해 설명.

여기에 [서신과 기타 통신문, 결정문 등을 포함하는 관련 서류/증빙을 표시]을(를) 동봉했습니다.

이 항의서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즉각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날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후원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을 방문해 주십시오.